

[별표 5] <개정 2009.11.16>

과태료 부과기준(제107조제3항 관련)

위반행위	해당 법 조문	과태료금액
1.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98조제3항제1호	50만원
2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를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98조제3항제2호	60만원
3. 법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·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된 기록을 제출한 경우	법 제98조제3항제3호	60만원
4.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문조사결과와 댐등의 관리상황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98조제3항제4호	100만원
5. 법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	법 제98조제2항	300만원
6. 법 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·보관하지 아니하거나,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,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경우	법 제98조제3항제5호	50만원
7.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·일시사용 또는 죽목·토석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	법 제98조제3항제6호	80만원
8. 법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경우	법 제98조제1항	500만원
9. 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법 제98조제3항제7호	80만원